

2011 KOLAS 교정기관 갱신평가 일정(16기관)

신청월	인정번호	인정유효기간	기관명	비고
1월	KC02-123	2007-09-15 2011-09-14	㈜한영넥스	
	KC02-146	2007-09-03 2011-09-02	㈜만도원주공장	
2월	KC07-217	2007-10-04 2011-10-03	㈜한신금풍	
	KC07-218	2007-10-16 2011-10-15	㈜성우이엔티	
	KC07-219	2007-10-16 2011-10-15	삼성에스디아이㈜천안	
	KC07-220	2007-10-31 2011-10-30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점	
3월	KC07-221	2007-12-03 2011-12-02	㈜하나계기	
5월	KC02-153	2008-02-04 2012-02-03	(주)씨엠엔텍	
6월	KC02-147	2008-03-07 2012-03-06	희성금속㈜	
	KC08-222	2008-03-07 2012-03-06	제일시험기㈜	
	KC08-224	2008-03-31 2012-03-30	안리쓰코퍼레이션㈜	
7월	KC03-158	2008-04-14 2012-04-13	㈜한국공업기술원	
8월	KC03-155	2008-05-09 2012-05-08	한국전기안전공사	
	KC03-157	2008-05-30 2012-05-29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11월	KC03-159	2008-07-21 2012-07-20	(주)덕인	
12월	KC02-150	2008-08-12 2012-08-11	㈜진용엔지니어링	

참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5조(갱신평가)1항에 의거하여 국가교정기관은 유효기관 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17조(신청기관의 요건)2항에 의거하여 인정취소 및 자진반납 (유효기관 만료 포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은 인정신청을 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측정심사) 1항에 의거하여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인정신청 범위내의 교정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정신청전에 인정신청분야내의 중분류별로 1개 항목이상에 대해 측정심사 또는 제27조(숙련도 시험)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